

라틴아메리카의 다문화주의와 흑인 인권*

- 브라질의 흑인 인권을 중심으로 -

김영철(부산외대 이베로아메리카연구소)**

- I. 들어가면서
- II. 다문화주의, 인권, 인종
- III. 브라질의 인종적 민주주의와 흑인
- IV. 브라질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흑인 인권
- V. 맺음말

I. 들어가면서

브라질은 민주화 이후 시민, 정치권 권리를 보장하는 신헌법을 제정했다. 신헌법은 브라질 정치 환경에 민주주의를 정착시켰으며, 개인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개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개인적 권리에는 브라질 사회에서 논의는 되었지만 법제화되지 못했던 인종적, 성적, 권력적 차별을 철폐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이 신헌법은 형식적·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화시켰으며 법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인권을 보장해주고 있어 브라질에서 민주주의가 질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환점을 마련했다.

신헌법은 역사상 처음으로 브라질이 다인종적·다문화적인 국가

* 이 논문은 2004년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KRF-2004-072-BM3062).

** Young-Chul Kim(Institut of Iberoamerican Studies, PUFs, quimcarlos@daum.net), "Multiculturalism and Human Rights in Latin America : Human Rights of Black in Brazil"

임을 인정한다. 또한 브라질이 지향해야 할 국가 모델로 사회적 소수자들의 권리가 인정되어 다양한 문화가 표현되고 공존할 수 있는 사회로 규정하고 있다. 즉, 다문화주의 사회의 구현을 국가적 목표로 삼고 있다. 다문화주의 사회는 필연적으로 민주주의라는 정치·사회적 환경을 요구한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민주적이기 때문에 소수 민족이나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권리를 신장하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한다. 즉, 소수 인종 집단과 문화 집단의 권리가 보장되고 각 집단에 속한 개인의 권리가 보호되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개인의 권리는 인권을 의미하는데, 인권은 “인간답게 살 권리”로 정의된다. 인간은 개인적인 삶이 어떤 외부적인 환경, 집단, 개인에 의해 침해받지 않고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할 권리를 지니고 있다. 인권은 개인적 자유와 권리가 보호되는 민주주의를 통해 실현되고 보장된다. 특히, 인권은 다문화주의 국가나 사회가 실현하고 있는 민주주의의 진정성을 나타내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 브라질은 통합주의 모델을 통해 특정한 인종이나 문화집단을 구조적으로 억압해왔다. 브라질이 다문화주의를 수용했다면 것은 다문화주의가 보장하는 인권이 보장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소외되고 억압받았던 집단에게는 사회·문화적으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인간다운 삶과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는 것을 뜻한다. 브라질 흑인들은 억압적인 환경에서 성장해 온 인종으로 이들의 인권이 보장되는가는 다문화적 민주주의가 얼마나 제도화되었는가를 밝혀주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다. 또한 다문화주의 환경에서 흑인의 인권이 어떻게 보장되고 확장되고 있는가를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브라질 민주주의의 진정성을 평가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신헌법에 수용된 다문화주의적 특성이 브라질 사회에서 가장 억압적인 환경에서 성장해 온 흑인들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다문화주의의 다인종 인정과 수용 정책이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브라질의 다문화주의적 상황에서 흑인의 인권 상황은 어떠한가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

전개를 위해 2장에서는 다문화주의, 인종과 인권을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3장에서는 브라질의 인종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인종관계와 흑인, 인종적 민주주의에 대해 파악하여 사회적 구성체로서의 흑인에 대한 인식과 지위에 대해 분석하며 4장에서는 다문화주의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인종주의 철폐와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통해 브라질의 흑인 인권의 상황을 분석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주의 사회인 브라질이 흑인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II. 다문화주의, 인권, 인종

II.1. 다문화주의, 인종과 인권

다문화주의는 같은 사회 공간 내에서 복수의 문화가 공존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준비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따라서 다문화주의란 문화적 현상을 포착하고 있는 정태적·수동적 개념이면서 동시에 문화 현상을 주도할 수 있는 동태적·능동적 개념으로 국가를 비롯한 사회 관리자의 힘이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다문화주의는 문화간의 격차와 이질성으로 무시되거나 차별되는 것을 전략적으로 방지하고 문화에 따른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갈등을 해소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다(구건서 2003, 30). 문화를 어떤 사회집단의 삶의 총체라고 정의한다면 다문화주의에서는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차별을 극복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측면에서 다문화주의는 서로의 차이를 인정한 가운데 공존하고 평등한 대우를 법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강권찬 2003, 43). 또한 다문화주의는 표면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문화집단을 구성하고 있는 인종 혹은 민족이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런 측면에서 다문화주의보다는 다인종주의가 더 적절한 표현이라고 주장되기도 한다(정상준 2001, 6).

따라서 다문화주의는 한 인종이 다양한 문화를 갖는 것이나 한 문화를 다양한 인종이 공유하는 것 등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종이 각각의 고유한 문화를 갖도록 공식적으로 인정하거나 정책을 통해 장려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서 말하는 인종은 어떤 공통의 조상이나 육체적 특징, 언어 등의 문화적 요소나 정치적 요소를 공유하는 인류학적 단위이며, 신체적 특징 이외에도 문화·역사적 요소를 공유하는 민족이라는 뜻까지 포함한 개념이다(박홍규 1996, 86). 이러한 개념은 인종이 단순히 유전학적인 특성만으로 규정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에서 형성된 사회적 구성체(Social Constructions)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브라질에서도 인종, 인종분류와 인종 이데올로기는 단순한 형질학적인 구분이 아니라 사회적 구성체로서 다루어진다(Wade 1997, 13-15; Telles 2003, 38; Guimarães 1997, 8). 사회적 구성체로서의 인종은 특수한 역사적 경험을 지니고 있는 각 사회마다 다른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인종적 정체성은 장소와 시기에 따라 다르게 정의된다(Seyferth 2002, 65).

이런 측면에서 다문화주의와 인종관계는 다음과 같은 상관관계를 지니고 있다. 첫째, 다문화주의는 인종차이를 극복하는데 유익한 이념이며 정책이다. 인종차이는 문화차이를 포함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문화차이를 위한 정책을 추진하는 개념인 다문화주의는 인종 갈등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둘째, 다문화주의는 소수민족의 정체성을 추구하여 소수민족 공동체를 형성하는 논리로도 작용한다. 다민족 사회에서 민족적 정체성을 유지시키는 것은 역시 문화적 전통을 계승·발전시키고 학습함으로써 가능한데, 다문화주의는 이런 사회적 제도를 정당화시켜주는 측면을 지니고 있다. 셋째, 다문화주의에서는 인종적 보편주의와 특수주의가 상충되기도 한다. 다문화주의는 다수민족과 소수민족의 존재를 동시에 인정하는 것으로 문화의 절대성과 인종의 절대성을 거부한다. 이런 측면에서 다문화주의는 문화적·인종적 차이를 극복할 수 있는 사상이며,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차이를 극복하는 이론과 정책을 제시한다(구건서 2003, 39).

따라서 다문화주의의 과제는 다른 집단에 속한 개인의 인간다움을 인정하고 함께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어떻게 보장해 줄 것인가? 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다문화주의는 민주주의를 의미하며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는 것을 뜻한다(정상준 2001, 6). 이것은 다문화주의가 인종적·문화적 측면의 개인의 권리인 인권을 보장해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은 문화 프로젝트로서 삶의 권리(right to life)를 의미하는 세 가지 측면을 지니고 있다. 첫째, 전체 국민들에게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것인데, 인권의 확대는 교육, 노동, 빈곤,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둘째, 모든 시민들에게 삶의 권리를 보장하는 시스템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인권문제가 권위주의 정권기의 정치 폭력이나 물리적 침해 행위를 처벌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만은 아니다. 시민, 정치적 권리뿐만 아니라 삶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다층적인 차원에서의 권리를 말한다. 셋째, 인권 확대는 차별적 상황을 개선하여 민주주의의 질적인 수준을 향상시킨다. 이런 측면에서 인권은 정치적·법적 권리뿐 아니라 인간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확대된다(Garretón 1996, 55-56).

이와 같이 다문화주의는 민주주의와 깊은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민주주의가 개인적 자유와 선택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고, 정책결정 과정에서 시민의 참여와 동의에 기초하고 있는데 다문화주의도 역시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잘 운용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의 인권 이데올로기가 사회민주화와 균등한 발전을 가능하게 한다. 그리고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의 권리, 집단 속의 개인의 권리,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는 시스템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 국가에서는 모든 시민의 권리 체계로 이해된다(이용승 2004, 182-183).

II.2. 다문화주의 정책

다문화주의는 정책 내용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구분되어 많은 논의들이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다문화주의는 다원주의와는 정책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인다.¹⁾ 다원주의 국가에서는 소수집단의 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지원이나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다원주의 국가의 소수집단의 문화 보호와 발전을 위한 정책은 자유방임의 형태를 이루고 있다. 또한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국가나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소수집단의 문화를 계승하거나 발전시키지 않고, 대신에 소수집단들이 자발적으로 계승·발전시키는 문화를 그대로 존중해준다(마르코 마르티니엘로 2002, 74). 이런 측면에서 다원주의는 소극적 평등주의라 할 수 있고, 다문화주의는 적극적 평등주의라 할 수 있다.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과 그 문화를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개입정도에 따라 ‘온건한’ 다문화주의와 ‘강경한’ 다문화주의로 나눌 수 있다. 온건한 다문화주의는 어떤 국가 내에서 발생하는 다문화적 현상과 같은 현상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반면, 강경한 다문화주의는 국민적 정체성을 확장시킬 것을 제안하며 그 과정에서 민족 집단들을 포함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한다(마르코 마르티니엘로 2002, 106). 그 외 성향에 따라 보수주의적 다문화주의,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좌파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비판적 다문화주의로 구분하기도 하고(김옥동 1998, 30), 유형에 따라서는 자유주의적 다문화주의, 조합주의적 다문화주의와 급진적 다문화주의로 나누기도 한다(이용승 2004, 187-189).

어떤 형태의 다문화주의이든 간에 문화와 정체성의 특수성을 지닌 개인들에게 권리를 인정한다. 다문화주의가 주장하는 개인의 권리 인정이 곧 인권의 한 측면을 이룬다. 이와 같은 다문화주의는 개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기 위해 다양한 내용의 공공정책을 추진한다. 첫째, 헌법상에 다문화주의적 특성을 인정한다. 최상위의 법인 헌법에서 다문화주의적 특성을 규정함으로써 정책들을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다. 둘째, 국가내의 소수 집단들에게 재정적 지원을 제공함으로써 문화적 다양성을 장려한다. 이를 통해 소외되거나 소멸될

1) 다문화주의를 자유주의적 다원주의, 코퍼레이트 다원주의, 급진적 다원주의, 연방제 다원주의와 분리·독립 다원주의 등으로 정의되기도 한다(구건서 2003, 40-43). 그것은 다문화주의가 문화 다원주의나 사회동포주의와 유사성을 지니고 있어 문화적 다양성과 상대성을 나타낸다(김옥동 1998, 40).

위험에 처해 있는 소수 집단의 문화가 다시 활성화되기도 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하기도 한다. 셋째, 다문화 사회를 이루고 있는 개인의 인종적 특성이 보장되는 차별철폐정책들을 추진한다. 차별철폐정책은 단순히 문화적 소수자만이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소수자를 포함함으로써 평등을 추구한다. 넷째, 교육부분에서 다문화주의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어느 정도 구조화된 사회적 통념이나 고정관념을 변화시킨다. 교육 부분의 다문화주의는 단일문화주의에서 벗어난 다원주의 교육에서 시작하여 다문화주의로 발전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 다섯째, 언어 정책으로 국내의 사회집단 중 공식 언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소수민족의 언어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 외에도 다문화 방송, 통역제도, 인종적·문화적 장애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 영역이 있다(이용승 2004, 187).

이처럼 다문화주의 사회를 수용하며, 문화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문화적 차별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인종주의 철폐와 교육의 권리이다.²⁾ 이러한 영역들은 인종적·문화적 차별을 인정하고,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다. 이를 통해 사회 내에 구조화되어 있는 차별의 구조를 극복할 수 있다. 따라서 다문화 사회인 브라질에서 흑인이 다문화주의적인 측면에서 인간답게 살 권리가 보장되고 있는가를 헌법적 측면, 인종주의 철폐와 교육 분야를 중심으로 분석하는 것은 브라질 사회의 다문화주의 수준을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흑인들의 인권 보장 정도를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분석틀이 된다. 브라질의 흑인은 다른 민족 집단들이 형성하고 있는 독립적인 언어를 지니고 있지 않다. 따라서 다문화주의적 언어정책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브라질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인종주의 철폐 정책과 교육의 권리를 분석한다. 그것은 위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제도적 변화와 고정관념의 변화를 발생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

2) 안드레아 켐프리니는 다문화주의를 문화적 다문화주의와 정치적 다문화주의로 구분하고, 문화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문화적 대립이 발생하는 곳은 교육, 성 정체성과 개인적 관계라고 지적한다(Semprini 1997, 45).

기 때문이다. 사회적 구성체인 브라질 흑인은 제도적 차별이 없는 환경에서 고정관념과 편견을 통해 차별받아 왔다. 이런 특성 때문에 다문화주의적인 법과 교육제도의 분석은 더욱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또한 왜 차별 제도 없는 차별이 유지되어왔고, 이런 환경에서 고정관념과 편견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를 파악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에 기초하여 흑인 인권의 현재 상황과 의미를 분석하고 다문화주의 환경에서 인권이 어떠한 방향으로 신장되어야 하는지를 제언한다.

III. 브라질의 인종적 민주주의와 흑인

III.1. 브라질의 인종과 흑인

19세기 말 유럽의 환경 결정론적 인종주의 이론과 제국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아 브라질에서도 인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유럽의 골상학을 비롯한 다양한 과학적 인종주의의 영향을 받은 브라질은 인구의 백인화가 근대국가를 형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인식했다. 이때부터 브라질은 인종적으로는 백인화, 문화적으로는 유럽화를 추구하게 된다. 브라질 사회가 백인화 될 수 있다는 논의는 과학적 인종주의의에 근거하고 있었는데, 첫째, 백인의 인구 성장이 흑인의 인구성장보다 높기 때문에 백인의 인구가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백인화된다는 것이다. 인종주의자들은 흑인은 낮은 출산율, 높은 질병 발병율과 비조직적인 사회구성으로 인해 인구성장이 늦다고 평가했다. 둘째, 유전적으로 백인 유전자가 우성이기 때문에 혼혈인은 백인의 밝은 피부색을 띠게 되고, 혼혈인들이 자신보다 더 밝은 피부색의 파트너를 찾기 때문에 점진적으로 백인이 브라질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흑인 인구의 성장이 낮은 것은 인종적인 특성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였다. 그리고 혼혈은 브라질에 새로운 인

종인 물라토(Mulato)를 형성했다. 앞에서 정의한 것처럼 인종이 사회적 구성체이기 때문에 브라질 사회의 인종관계에서 만들어진 물라토는 독립된 인종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브라질에 인종은 크게 백인, 물라토, 흑인, 인디오 등으로 나뉜다. 결국 백인화 논의는 과학적 논리에 따라 진행되었지만 오히려 비과학적인 논리가 된다.

브라질 사회의 구성체인 인종적 특성을 설명하기 위한 논의들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진행되었다. 첫째는 동화주의적 인종주의자들인데, 흑인은 혼혈 사회에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인종적·문화적으로 동화되고, 흑인의 동화는 지배 계급인 백인 인구 성장과 도덕적인 책임에 따라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즉, 흑인은 미국과 유럽의 산업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것과 동일한 패턴으로 재편되어 백인 사회로 흡수되면서 백인화 과정이 진행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브라질의 백인화는 백인 이민이 증가했던 일정 기간에만 발생했을 뿐 시간이 경과할수록 혼혈적인 특성만 강화되었다. 혼혈로 인해 브라질 인종은 합리성과 권력을 지닌 백인, 백인화되는 혼혈인, 인종적·사회적으로 열등한 흑인, 야만적인 인디오로 구분된다. 여기서 흑인은 백인 주도로 혼혈을 통해 소멸되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결국 흑인은 브라질이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낙후된 원인이기 때문에 혼혈을 통해 동화시키거나 흡수되어야 하는 존재로 인식되었다. 더욱이, 혼혈은 생물학적인 혼혈뿐만 아니라 문화적 혼혈도 포함하기 때문에 흑인의 문화적 가치와 권리를 자연스럽게 소멸시키거나 무시하게 되었다.

둘째는 인종적 민주주의자들인데, 브라질의 인종 관계는 독특한 인종으로 인해 인종 차별이 없는 인종적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포르투갈인의 혼혈에 대한 개방적 태도가 브라질의 비차별적인 인종 관계를 형성했다고 본다. 포르투갈의 식민 정책, 특히 노예 정책이 로마 가톨릭과 이베리아 노예법에 기초하고 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³⁾ 그러나 흑인들에 대한 관대한 처우

3) 탄넨바움은 미국과 라틴아메리카의 노예제를 비교하면서 노예의 지위와 노예제 폐지 이후 인종 관계를 형성하는데 있어 제도적, 문화적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했다라는 비판을 받았다.

는 식민 기간의 법제도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식민 경제의 특수한 구조가 상대적으로 느슨한 환경을 만들었기 때문이었다. 즉, 브라질과 라틴아메리카 식민 경제는 대규모의 노동력을 필요로 했으며 노예가 증가하면서, 노예 노동력을 관리하는 계층이 필요했다. 미국에서는 중간계층을 백인으로 충원했지만 브라질에서는 혼혈인들이 담당했다. 이러한 경제적 환경이 혼혈을 더욱 확대시켰다. 결론적으로 브라질 역사는 열대 자연 환경에서 유럽인들이 아프리카인, 아메리카 인디오와의 인종적 혼혈을 통해 “예외적인 독특한 인종 (Unique Race)”을 형성하는 과정이었다. 예외적인 독특한 인종론은 생물학적 결정론에 기초한 백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화적 잡종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백인의 인종적 헤게모니와 문화적 우월성을 인정하고 있다(Martínez-Echazábal 1998, 21).

셋째는 다인종 계급 사회론자들인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종적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등장했다.⁴⁾ 브라질에도 미국과 같은 인종 차별이 존재하며, 인종적 민주주의론자들이 주장하는 역사적 배경과 가부장적 제도로 인해 오히려 계급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또한 흑인은 노예제 폐지와 자본주의 발전 과정에서 형성된 사회적 환경 때문에 브라질 자본주의 사회에 적응하지 못했다. 흑인은 노예제 폐지 이후 법적인 지위 변화에도 불구하고 산업 사회에서 요구하는 기술 훈련과 교육을 받지 못해 산업 사회에서 경제적으로 통합되지 못하고 한계화 되었기 때문에 인종적 지위를 변화시키지 못했다. 흑인은 사회 계급의 최하층을 이루며 단순 노동자로 전락했다. 이러한 흑인의 경제·사회적 지위는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모든 과정들이 법제도적인 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브라질 사회에 형성되어 있던 고정관념과 편견을 통해 만들어진 것이다.

4) UNESCO, 플로레스탄 페르난데스(Florestan Fernandes), 페르난두 앙리케 까르도주(Fernando Henrique Cardoso) 등을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특히, 플로레스탄 페르난데스는 1965년 “계급 사회에서 흑인의 통합(A Intergação do Negro na Sociedade de Classes)”이란 저서를 통해 20세기 아프로 브라질인의 사회 문제와 계급적인 한계성은 노예제로 흑인이 노동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지니고 있고 흑인의 노동 참여가 사회적으로 제한되었기 때문이라 주장했다(Davis 1999, 11-12).

III.2. 인종적 민주주의

인종적 민주주의는 포르투갈계 브라질인들의 사회적 민주주의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통해 형성되었다. 질베르투 프레이리는 인종적 민주주의 개념을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이베리아의 문화적 특성을 배제하면서 논쟁을 유발시켰다. 프레이리가 채용하고 있는 이베리아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가 아니라 사회적 민주주의이다 (Guimarães 1997, 22). 이와 같은 인종적 민주주의는 민중주의와 권위주의 정권에서 더욱 강화되었는데, 그것은 브라질 사회 문제를 축소하고 통합정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과정에서 인종적 차이와 차별에 대한 논의들은 공식적으로 금지되었으며,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가상적 현실을 강조한다. 그러나 권위주의 정권이 약화되면서 인종적 민주주의 신화는 점점 약화되었으며, 브라질 사회에도 인종차별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졌을 뿐만 아니라 차별적 환경으로 인해 흑인이나 기타 소수 인종이 브라질 사회 발전에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런 측면에서 인종적 민주주의는 기존의 계급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이데올로기이며 계급투쟁의 목적이기도 하다. 까를루스 아센발그는 인종적 민주주의를 반인종주의 운동에서 가장 장애가 되는 이데올로기라고 평가한다.

따라서 인종적 민주주의에서 “민주주의”는 일반적인 민주주의 개념을 의미하지 않는다. 첫째, 민주주의가 상대적인 개념으로 사용되었다. 인종적 민주주의는 브라질이 다른 나라들보다 상대적으로 조화로운 인종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민주주의는 인종적 민주주의가 어떤 단계를 예정하고 있다거나 법·제도적인 장치 마련의 수준을 정의하지 않음으로써 보편적인 정치적 개념의 민주주의를 상정하지 않는다. 둘째, 프레이리가 정의한 민주주의 사회는 불평등과 타협이 가능한 민주주의이다. 즉, 브라질의 역사를 통해 형성된 사회 구조는 이미 불평등한 구조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구조를 민주주의라고 인정하고 있다. 따라

서 인종적 민주주의는 흑인과 백인간의 사회적 불평등과 소득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 가치인 기회 평등과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셋째, 브라질의 인종관계는 관용과 비폭력성으로 인해 세계에서 가장 앞선 인종적 민주주의를 이루고 있다고 평가한다. 폭력적이지 않다고 해서 인종차별주의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니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브라질의 인종차별은 사회구조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는 변화의 가능성이 더욱 낮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인종적 민주주의는 어떤 완전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형성 과정에 있는 것으로 브라질 사회는 편견과 차별이 존재하는 불평등 사회이다(Cruz 2002, 9). 즉, 브라질은 모든 인종 집단이 가지는 생물학적, 문화적, 사회적, 정치적 차이를 혼합적이고 잡종적인 매트릭스(matrix)로 통합하는데 인종적 민주주의를 이용했다. 따라서 인종적 민주주의는 백인과 흑인의 인종적인 혼혈은 상정하고 있지만 사회적·경제적 차별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나 개인의 권리를 함의하지는 않는다(Guimarães 2003, 253).

이상과 같은 인종적 민주주의는 몇 가지 점에서 인권 침해를 유발할 수 있는 모델이다. 첫째, 브라질 사회가 인종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정의 자체가 비민주적이고 조화롭지 못한 사회라는 것을 그대로 보여준다. 어떤 사회가 법적·제도적 장치가 잘 마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사회 어디엔가는 불평등과 부조화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종적 민주주의가 인종적 정체성을 부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민주적이다. 다인종, 다문화 사회는 그 속에 각각의 인종적·문화적 정체성을 지니고 있는 개별 집단들이 있다. 이러한 각각의 구성원을 인정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이다. 그러나 브라질의 인종적 민주주의에서는 문화적·인종적 이질성을 지니고 있는 사회집단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인종적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내면적 의미에 관심을 지녀야 한다. 인종적 민주주의는 브라질인들이 백인화되어 간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회구조가 백인화를 부추기거나 백인화를

가속화시키는 경향을 지니고 있다. 그렇지만 어떤 법·제도적인 장치를 통해 백인화를 추진하지는 않았다. 흑인을 비롯한 소수 인종과 문화 집단의 입장에서 보면 차별적 구조를 형성하는 제도가 없다는 것은 권리를 뚜렷하게 주장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환경에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제도 없이 이루어지는 차별을 증명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권리를 주장해야 한다. 이 때문에 흑인운동은 정치운동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문화운동으로서 명맥을 유지해 왔다.

IV. 브라질의 다문화주의 정책과 흑인 인권

IV.1.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

브라질은 노예제 폐지이후 흑인의 사회활동을 법·제도적인 통제 시스템으로 제한하지는 않았지만,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브라질 사회에서 형성되어 있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인해 흑인들은 평등한 사회적 권리들을 누리지 못했다. 이러한 불평등한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의식이 약화되었다. 즉, 사회활동을 할 때 자신들을 경멸하는 태도를 접하게 되면서 스스로 흑인임을 거부하는 풍토가 만들어졌다. 그렇지만 경멸적인 사회 풍토에 대해 적절한 대응 전략을 추진할 수 없었다. 그것은 브라질이 사회 통합을 촉진하기 위해 인종적 민주주의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었기 때문이고 인종 문제에 대한 공개적인 논의를 금지시켰기 때문이었다. 흑인들은 이러한 사회 환경에서 점점 인종적으로나 문화적으로 흑인의 범주에서 벗어나려고 했고, 그 결과 인종적 정체성이 희석되었다. 일반적으로 인종적 정체성은 자의식과 타자성을 통해 형성되고 강화되는데, 흑인들의 자의식은 점점 약화되었고, 타자성은 법·제도적인 통제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제한적인 영역에서만 작용했다. 결국 인종으로서의 집단적 정체성이 형성되지 않아 미국과 남아공에서와 같은 흑인운동

이 브라질에서는 발전하지 못했다.

미국과 남아공의 흑인운동은 높은 자의식과 타자성에 기초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어 자신들의 권리를 쟁취했다. 두 국가의 흑인운동은 정치·사회적 권리를 주장하여 정치운동으로 성장했다. 그러나 브라질 흑인들은 비교적 앞선 1930년대 흑인운동을 전개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트 집단의 이데올로기에 매몰되어 자신들의 권리를 온전히 주장하지 못했다. 이후 흑인운동은 정치적 권리나 개인적 권리를 주장하는 정치운동이 아닌 흑인 문화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한 문화운동으로 발전했다. 특히, 문화운동은 1970년대 정치적 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확대되었으나 대중적인 운동으로 성장하지 못했다. 민주화운동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흑인의 문화운동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브라질의 민주화 운동은 도시 노동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되었는데 흑인과 몰라토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그러면서 문화 중심의 흑인운동이 사회적 불평등의 개선을 요구하는 신사회운동으로 전환되었다. 따라서 80년대 민주화 과정에서 흑인들은 자신들의 권리를 좀 더 강하게 주장할 수 있었다.

민주화 이후 브라질 사회는 신헌법에 기초하고 있다. 1988년 제정된 신헌법은 다양한 사회 계층들의 요구와 주장을 수용하는 민주주의 체제이다.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출신 지역과 국가, 성적 차이, 피부색의 차이와 경제적 차이로 인해 차별받지 않는다. 이런 측면에서 신헌법은 특정한 집단에게 권리를 인정해 줄 수 있는 근거와 민주주의 실현의 기본적인 원칙을 마련했다. 이와 같이 신헌법은 브라질이 지향해야 하는 민주주의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신헌법은 브라질 헌정사에서 오랫동안 계속되었던 권위주의 체제가 종식되었다는 상징적으로 나타내 준다. 일반적으로 헌법은 어떤 국가가 특정한 정책 추진을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할 수 있게 한다. 이런 점에서 브라질 사회의 변화와 변화의 지향점들을 담고 있다.

또한 헌법에는 이례적으로 인디오들의 권익을 옹호하는 규정 등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신헌법 초안은 제헌의회에서 작성되었는데 흑인 의원인 까를로스 알베르토 지 올리베이라

(Carlos Alberto de Oliveira)를 비롯한 비교적 다양한 계층 출신들이 참여했다. 까를로스 의원은 흑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필요한 내용들을 제안했다. 그는 의회 연설에서 인종차별을 범죄로 규정해야 하는 이유를 다음과 같이 강변했다.

“100년 전 노예제 폐지로 시작된 정치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현재 새로운 형태의 인종차별이 존재하며 흑인들과 그의 후손들인 브라질인의 절반 이상이 영향을 받고 있고, 시민의 완전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인종주의는 시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종차별행위를 범죄로 규정해야 한다.”

그의 주장에 따라 1988년 연방헌법 5조에 모든 사람은 계급에 상관없이 법 앞에 평등하며 모든 브라질인들은 생명, 자유, 평등, 안전과 재산에 대해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인종차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명문화했다.

“법은 기본적인 권리와 자유에 반하는 모든 차별행위를 처벌한다.”
 “인종주의는 보석(保釋)되지 않는 범죄이며 법에 따라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인종차별은 이전의 법체계에서는 경범죄였다. 이는 범죄행위가 발생하더라도 벌금과 같은 가벼운 처벌만 받았다. 때문에, 신고는 되지 않았지만 학교, 직장과 사회생활 전반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한, 범죄 행위임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신고하지 않았고, 신고해도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나 신헌법에서 차별 행위를 중범죄로 규정함으로써 차별 행위가 중대한 잘못이며, 브라질 사회 통합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인식을 확대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 차별 행위에 대한 신고 건 수는 여전히 적다. 그렇지만 신헌법에서 명확하게 중범죄 행위로 규정함으로써 사회 전반에서 인종차별에 대한 인식이 점점 변하고 있다. 이처럼 신헌법은 차별받고 있는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다.

신헌법인 다양한 사회 계층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다는

것을 전문을 통해 알 수 있다. 전문은 브라질 사회의 다인종적·다문화적 특성을 인정하고, 특성을 극대화하고 사회적 통합을 달성하기 위해 다문화주의적인 사회를 지향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편견으로부터 자유롭고 조화로운 다원주의적 사회를 발전시킬 것을 재확인하고 있으며, 사회적 소수자인 인디오와 흑인의 문화권을 보장하고 있다. 전문의 다문화주의는 국가가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을 통해 문화적 권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준다.

이와 같은 전문에 기초하여 헌법에는 차별에 대한 다양한 규정들을 담고 있다. 제4절 3조에서는 출신, 인종, 성, 피부색, 나이나 기타 어떠한 형태의 차이로 인한 편견 없이 모든 사람들이 잘 사는 사회를 만들고자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4조에서는 테러리즘과 인종주의를 거부하는 국제관계의 원칙을 준수한다고 천명한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회적 차별로부터 인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규정하고 있는 것들이다.

브라질 헌법은 일반적인 차별철폐와 더불어 흑인과 흑인문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6장 5조에서는 아프리카에서 유래한 흑인문화, 종교의식과 관습들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믿음의 자유, 종교의식의 자유로운 행사, 종교와 예배 장소에 대해 보호받고 침해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한다(United Nations 2004, 11-12). 그리고 212조 1항에서는 국가가 대중, 인디오, 아프리카계 브라질 문화뿐만 아니라 브라질 문화 형성에 기여한 모든 표현물을 보호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 2항에서는 법으로 다른 민족 집단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 기념일을 축하하는 것을 인정했다. 역사 인식의 변화는 1절 242조에서 찾을 수 있는데, 역사 재평가에 따라 역사 교육과 교과서를 재편성할 것을 주장한다. 이 조항은 브라질 형성에 기여한 문화와 민족 집단의 업적들을 인정해주고, 역사적 사건들을 교과과정에 포함시키는 다문화주의적 교육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을 규정한다.

이런 법안에 따라 11월 20일이 “흑인 자의식의 날”로 지정되었다. 이날은 식민기간 노예저항운동의 지도자로 영웅적인 활동을 했던 줌

비(Zumbi)가 포르투갈 식민 정부에 의해 죽임을 당한 날이다. 따라서 줌비는 흑인들에게 저항 정신을 나타내는 인물이다. 기존의 역사 평가에서 줌비는 브라질 사회 통합을 위협했던 인물이었다. 그러나 민주화이후 다양성이 인정되면서 브라질 역사 발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인물로 재평가되었다. 역사상 처음으로 백인이 아닌 흑인의 역사적 업적을 인정해준 일이며, 흑인의 자긍심을 높여주는 동시에 소수 집단들의 사회적 가치를 인정한 것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와 더불어 과거 도망 노예들의 공동체였던 킬롬부(Quilombo)를 브라질의 문화유산으로 인정했다. 킬롬부가 문화유산으로 인정받으면서 공동체를 유지하고 있는 킬롬부의 토지 소유권을 인정해주는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킬롬부의 경우 단순히 문화유산을 보존한다는 차원을 넘어 현재적 차원에서 활용되고 있다. 브라질 정부는 열악한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방법으로 킬롬부의 경제 시스템인 공동생산 방식을 지원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1988년 헌법은 민주화 이후 브라질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민주주의 이념을 담고 있어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첫째는 정치적인 측면인데, 1964년 군사쿠데타 이후 브라질에서 새롭게 제정한 헌법으로서 민주화 과정에서 시민사회가 요구했던 시민, 정치적 권리 모두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적으로는 민주주의가 주장하는 시민, 정치적 권리는 온전히 보장된다. 그러나 시민적 권리가 현실적 측면에서도 잘 지켜지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향후의 문제는 시민적 권리가 잘 보호되고 있는지 감시, 감독하는 것이다. 둘째는 경제적인 측면인데, 경제발전 모델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는 조항들이 포함되어 그 동안 유지되어 왔던 국가주도의 경제성장 모델에서 탈피하여 시장 지향적 경제 모델로의 전환을 가능하게 했다. 그러나 신자유주의는 소외계층에 대한 보호 장치들이 없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의 권리가 침해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 셋째는 사회적인 측면인데, 그 동안 브라질 사회에서 소외받았던 인종, 집단과 민족에 대한 재평가가 가능하게 되어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었으며, 인디오와 흑인이 브라질 역사와 문화 발전에 미친 영향이

재평가 되었다. 넷째는 문화적인 측면인데, 브라질이 지니고 있는 문화적 다양성을 인정하여 다문화주의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다. 이처럼 신헌법은 브라질 사회 전반에 많은 변화를 유발시켰으며 또한 민주주의가 확대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신헌법은 흑인들의 존재와 문화유산을 인정해주는 최초의 헌법이다. 브라질의 인종관계는 2장에서 지적한 것처럼 인종적 민주주의로 포장되어 조화로운 관계이며 인종차별이 없는 사회로 묘사되었는데, 신헌법은 브라질 사회에도 인종차별이 존재하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법적·제도적 장치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신헌법은 다문화주의적인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어 민주주의를 구현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각각의 인종들에게 주어지는 권리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여전히 형평성의 원칙이나 차별의 문제를 안고 있다.

IV.2. 인종주의 철폐

브라질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인종차별 관련법은 1951년 알폰소 아리노스 법(Alfonso Arinos Act)이었다. 이 법은 두 가지 의미를 지니는데 첫째, 당시까지 브라질은 인종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었는데 이를 통해 인종차별이 발생하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고 둘째, 인종차별에 대한 논의를 촉발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위주의 정권 하에서 인종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는 금지되었다. 인종문제는 민주화 이후 논의가 본격적으로 확대되었다. 그렇지만 1970년대 이후 신사회 운동을 통해 흑인운동은 싹트기 시작했으며, 초기의 흑인운동은 주로 문화 운동에 집중되었다. 앞에서 지적한 것처럼 인종적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흑인은 인종적 정체성을 상실하고 있었다. 인종적 정체성이 희석된 상태에서 문화 운동은 권위주의 정부로부터 억압받지 않고 흑인운동을 전개할 수 있는 대안으로 등장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군부정권이 흑인 문화를 상업화하는 측면이 있어 활동 무대를 점점 확대할 수 있었다. 이

렇게 진행되어 오던 흑인운동은 민주화로 사회 운동의 수준을 넘어 정치화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브라질과 같이 인종적 정체성이 희석된 상태에서 흑인 운동이 정치화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문화 운동을 통해 인종적 정체성을 형성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90년대 이후 라틴아메리카를 비롯한 전세계로 확대되었던 민주화와 인권 논의가 사회적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이 되어 주었다. 정치화 과정을 통해 흑인들이 직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범위가 확대되었으며, 특히 입법 발의와 결정 과정에 참여하면서 인종주의 철폐를 위한 법안들을 입법화했다.

인종차별철폐법(Affirmative Action)은 다문화주의 정책이며 적극적인 평등정책이다. 적극적인 평등 정책은 사회적으로 소외되었거나 억압받았던 집단이나 계층에게 적극적인 우대 조치들을 포함한다. 그러므로 인종차별철폐법은 그 동안 소외된 집단이 주류 사회로 통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 또한 특정한 사회집단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장해줌으로써 인권을 신장시킬 수 있는 가능성도 더욱 높아지는 것이다.

1989년 1월 5일 인종차별 철폐법 혹은 카옹(Cão)법으로 알려진 제 7716호 법령이 제정되었다. 이 법은 인종차별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제4조에서 민간 기업에서 발생하는 흑인에 대한 고용 거부나 방해하는 행위는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에 처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제20조에서는 인종, 종교와 민족에 대해 편견이나 차별을 선동하거나, 권하거나, 자행하는 행위, 제11조에서는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주거 건물이나 공공건물의 접근을 방해하는 행위, 결혼과 가족형성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각각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Guimarães 2004, 45). 이와 같이 카옹 법은 인종과 피부색에 대한 침해를 범죄로 규정했을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처벌에 대해서도 명확히 하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법령들과는 확연히 구분된다. 그러나 이 법안은 다소 모호하고 피상적이라는 비판을 받았으며, 인종과 피부색에 의한 차별로 제한하는 한계성을 지니고 있었다. 제8081/90 연

방법은 이러한 불분명한 부분을 보강하여 발표했는데 출판과 언론매체들이 인종, 피부색, 종교, 민족 집단이나 출신국가에 따라 침해하거나 차별하는 행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제7716호 법령 제20조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1997년에는 제7716호 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는 법령이 공포되었다. 제9459호 법령은 처벌대상을 인종, 피부색, 민족, 종교와 국적에 기초한 편견이나 차별로 인해 발생한 차별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이 법령에 따라 다른 민족, 다른 종교와 다른 국적을 가진 자들도 브라질에서 법적으로 보호받게 되었다. 이 법안은 브라질 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회임을 인정하고 브라질이 다른 문화들을 수용하는 태도를 다문화주의적으로 변화시킨 것으로 단순한 차별철폐법의 수준을 넘어 문화적 다양성을 촉진한다.

그러나 인종차별철폐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인종차별 범죄로 인해 처벌받은 경우는 없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1995년 11월 20일 대통령령에 따라 흑인의 사회진출을 위한 부처간 집담회(Working Group)가 개최되었다. 집담회를 통해 아프리카계 브라질인들의 권리를 신장시키는 공공정책을 수립했는데 첫째, 겸상적혈구 빈혈증(sickle-cell anemia)⁵⁾ 퇴치를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할 것, 둘째 사망, 출생증명서에 피부색과 관련된 항목을 포함시킬 것, 셋째 학교 인구센서스와 모든 교육 통계조사에 피부색과 인종 항목을 포함시킬 것, 넷째 길림부의 땅을 되돌려주려는 임시조항 68조에 대한 연구를 진전시킬 것, 다섯째 브라질의 사회발전에 기여한 아프리카인들의 입장을 수용한 브라질 역사 재평가를 위한 TV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할 것, 여섯째 인종, 피부색과 성의 고정관념을 배제한 교과서의 재평가, 일곱째 인종차별을 방지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마련하는 것이었다. 보수주의자와 인종적 민주주의론자들은 이러한

5) 아프리카 흑인들에게 발생하는 유전병의 일종, 겸상 적혈구 빈혈증은 열성유전이 되어서 보인자들이 유전자를 자손에게 물리고 물려 그중 하나가 또 다른 보인자와 결혼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보인자가 되거나, 겸상 적혈구 빈혈증에 걸리게 된다. 유전적인 특성으로 인해 아프리카 인들에게 많이 발병한다.

내용들이 오히려 인종차별을 조장한다고 비판한다. 사실, 인종적 분류를 명확히 한다는 것은 자칫 인종차별을 발생시킬 수 있다. 그러나 사회 활동에서 인종적 구분을 한다는 것은 각각의 인종들이 지니고 있는 특성들을 인정하며 차별이 아닌 차이를 이해하고, 그 이해에 기초해 사회 통합을 추진한다는 측면에서 차별 극복을 위한 정책이다.

인종차별철폐법안들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인권 프로그램에도 포함되었다. 1996년 5월부터 실시된 제1차 인권 프로그램은 권위주의 체제와 민주화 과정에서 발생했던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한 처벌과 시민,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권위주의 집권기간 사망자들에 대한 법적 지위 개선과 희생자 가족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졌으며, 과거청산 사법권을 군사법정에서 민사재판으로 이전시켰으며, 폭력행위를 자행했던 군장교와 경찰에 대한 기소권을 확보했다. 제1차 인권 프로그램의 성과를 바탕으로 UN과 OAS 등의 국제기구 인권 신장과 보호 프로젝트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UNITED NATIONS 2004, 80-81).

2001년에 발표된 제2차 인권 프로그램은 아프리카계 브라질인, 게이, 레즈비언, 여성, 노인, 어린이, 청소년, 인디오, 장애인들과 외국인들을 브라질 사회에 완전히 통합시키고 차별받는 사회집단의 배제나 인종주의를 철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런 취지를 살리기 위해 법무부, 농림부와 히우 브라코 연구소는 신규 채용 과정에 흑인들에게 20%를 배정하는 흑인 할당제를 도입했다. 최근 실시된 농림부와 일부 정부 산하 기관의 신규 채용에서 이러한 할당제가 지켜졌다. 이러한 적극적인 우대 조치는 다원주의 원칙을 연방정부기구로 확대함으로써 사회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다.(SEDH 2002, 13; Untied Nations 2004, 82) 최근 연방 정부 기구뿐만 아니라 주정부 기관에서도 시행하고 있어 정부가 의도했던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정부차원에서의 변화는 법제도의 변화로 이어지고 있다. 2003년 히우 그란지 두 술 출신의 파울루 파임(Paulo Paim) 상원

의원은 정부기관에서만 일부 적용하고 있는 적극적 우대조치를 다른 영역으로 확대시키는 인종평등법을 제안했다. 그가 제안한 인종평등법은 TV 광고, 영화, TV 프로그램, 정당, 기업, 공무원, 공립대학과 사립대학 과정에 흑인들의 접근을 약 20% 이상을 우선적으로 할당하는 것이다. 이 법안이 시행되면 자신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법규가 승인되면 아프리카계 브라질인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노예해방이 될 것”이다(Paim 2003, 3). 그 외 인종 평등 장려 기금(Fundo Nacional de Promoção da Igualdade Racial)을 마련하여 인종차별로 인해 입은 피해 보상의 길이 열리게 된다. 이와 함께 민간 기업에서도 동일한 비율로 흑인들을 고용할 것을 입법화하고 있다. 언론매체에도 동일한 규정이 적용되어 출연자 중 20%를 아프리카계 브라질인을 출연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브라질 정치에서 이와 같은 인종차별철폐법에 대한 논의가 확대되고 적극적 우대조치가 실행되면서 흑인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TV 드라마가 제작되기도 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브라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인종차별철폐법은 짧은 역사에 비해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적극적 우대조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최근의 변화들은 흑인들이 브라질 사회의 온전한 일원으로 통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최근의 인종차별철폐법은 특성에 따라 몇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브라질인과 문화로서 흑인과 흑인 문화를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인식의 변화에 따라 교육 프로그램에서도 흑인과 문화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 둘째, 흑인의 인권 신장 배경에는 외적인 요인도 작용하고 있는데, 90년대 이후 국제사회의 새로운 이슈가 인권이었던 점을 고려한다면 일회적 현상으로 거칠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일시적인 현상으로 머물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다문화주의가 유지되는 민주주의의 정착이 이루어져야 한다. 셋째, 법률과 제도가 구체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이전의 인종차별철폐법들이 포괄적인 의미의 인종차별 현상만을 규정했던 것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넷째, 기존의 인종차별철폐법들이 수동적인 의미의 차별 방지

수준이었다면 최근의 법들은 적극적인 평등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법안이다. 다섯째, 법제도적인 수준에서는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지만 현실적인 측면이 따라 주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인들의 일상생활에서도 흑인을 비롯한 사회적 소수 집단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기 위한 사회 시스템이 변화되어야 하고, 브라질인들이 지니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도 변화되어야 한다. 고정관념과 편견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해 형성되고 유지되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한다면 극복될 수 있을 것이다.

IV.3. 교육에 대한 접근성⁶⁾

교육의 권리는 권리를 향유하고 있는 동태적이고 정량적인 부분보다는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 교육의 권리는 차별 없이 누구나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의미한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법제도적인 내용보다는 현실적인 내용이다. 그것은 브라질과 같이 경제적 불균형이 심한 사회에서는 법제도적인 장치가 평등 원칙을 준수하면서 형성되어 있다고 해도 교육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의 차이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는 그 사회의 속성을 파악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신헌법 205조에는 모든 국민은 교육 받을 권리를 지니고 있으며 국가와 가족은 교육의 의무를 지니고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육은 사회 협력을 증진시키고 개인의 능력을 개발하는 것으로 시민정신 함양과 직업교육을 위해 이루어진다고 밝히고 있다. 206조에

6) 교육의 권리는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와 교육받을 권리로 구분된다.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는 교육받을 자는 인종·성별·종교적 신앙, 사회적 신분 및 재산, 가정환경 등에 차별을 두지 않고 오직 정신적·육체적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균등하게 교육 받을 권리는 국민은 자신의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해 교육상의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않는다.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는 국가가 소극적으로 교육에 있어서 차별대우하지 않을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기회가 모든 사람에게 실질적으로 균등하게 될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적으로 배려를 할 것을 의미한다. 교육은 개인의 권리를 신장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어떤 사회 내에 형성되어 있는 고정관념을 변화시키고 편견을 수정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서는 학교 교육 접근의 평등, 학습, 교육, 연구와 사상, 지식과 표현의 자유, 사상의 다원성, 무상 공교육 등의 기본 원칙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법적인 차원에서는 차별적인 조항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의 교육 시스템은 차별적인 상황과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교육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차별적 상황은 경제·사회적인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이다. 엄격하게 정의하자면 이러한 현상도 불평등한 사회구조로 인해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경제적 권리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육의 권리는 사회 성원들이 개인적 수준에서 자신들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차별적 상황을 극복하는 토대를 제공해 준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다문화주의 정책에서 교육은 차별을 극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특히, 다문화주의 교육 정책은 교과서의 내용과 고등교육의 접근 기회를 얼마나 평등하게 제공하는가가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Semprini 1997, 49).

교과서 내용은 역시 사회적 인식이나 헌법에 수용된 내용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동화주의적 입장을 고려한 교과서 내용은 민족의 우수성, 단일 문화적 특성을 강조한다. 이러한 문화적 특성 강조는 다른 문화 혹은 외생적 문화에 대해 금기시하는 사회 분위기를 형성하게 된다. 브라질은 독립 이후 동화주의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 따라서 국내에 형성되어 있는 각각의 문화적 특성은 브라질적인가(백인화) 그렇지 않은가를 평가하여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가 문화 활동을 제한하거나 무시하는 정책을 폈다. 브라질적인 문화란 유럽과 백인 문화로 정의되어 있었다. 따라서 유럽적 요소를 지니지 못한 문화는 점진적으로 약화되었고, 중국에는 소멸되기도 했다. 사실, 흑인문화는 동화주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던 시기에 일부 지역에서 활성화되었다. 그렇지만 일부 지역에서 활성화된 흑인문화가 다문화주의적 입장에서 성장했다고 하기 어렵다. 그것은 권위주의 정권기간 흑인문화가 외생적인 것으로 인식되어 관광 상품화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다면 다문화주의적 환경에서 브라질의 교과서 내용은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첫째, 아프리카계 브라질인들과 관련된 내용들이 포함되었다. 교과과정 개편은 브라질 역사와 문화 형성에 영향을 미친 흑인의 업적을 인정해 준다. 따라서 교과서 내용에서도 흑인들의 노예 경험과 노예가 브라질 사회 형성에 기여한 점들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시키고 있다. 민주화 이전 브라질 역사에서 중요한 인물들은 모두가 백인이거나 백인과 유사한 외모를 지닌 혼혈인들이었다. 그러나 다문화주의에서는 흑인이 국가적 영웅으로 등장한다. 브라질 교과서뿐만 아니라 문화적으로 인정되는 대표적인 인물은 앞에서 지적한 쥘비이며 문화유산은 킬롬부이다. 둘째, 관련 도서와 자료에서 인종적 민주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으로 교과서 저자들의 인종적 다양성이 증가했으며 내용면에서는 브라질 사회 발전에 영향을 미친 다양한 요소들을 다루게 되었다. 셋째, 다인종적 교수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포괄하기 위해 교육시스템의 전문가와 교육자 양성이 이루어졌다. 이는 다인종적 사회가 습득해야 하는 사회 관습이나 매너를 교육함으로써 차이에 대한 이해를 넓히기 위한 것이었다. 넷째, 소수 인종들이 대학에 접근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시켰다(Porto 2002, 225).

다문화주의 교육정책은 소수 인종과 민족을 위한 고등교육 접근에 대해 적극적 우대 조치들을 포함한다. 고등교육 접근은 우선 그 동안 고등교육 접근이 불가능했던 소수 집단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한계 집단의 통합을 촉진하기 위한 좋은 조건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고등 교육의 접근은 대학 진학 시 특정 인종의 입학에 우선적으로 인정하는 할당제를 통해 이루어진다. 브라질에서 대학 진학에 대한 적극적인 우대 조치는 브라질 사회에서 인종주의에 대한 논의를 공식적으로 진행시켰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다음으로 할당제는 흑인을 배제시키는 요인으로서 인종주의를 근절한다는 의미를 지닌다. 그리고 할당제는 브라질 역사에서 소외되고 차별받아온 모든 아프리카계 후손들에게 제공되는 보상적 의미를 지닌다. 마지막으로 흑인들이 브라질 사회에 통합된다는 것을 의미한다(Porto 2002, 229).

이와 같이 고등 교육의 접근 확대는 흑인들의 사회 통합을 촉진하고 차별을 최소화하는 대안으로 활용된다. 그러나 브라질에서 대학 입학 정원 할당제는 일부 대학에서 추진되고 있는데⁷⁾, 인종차별철폐의 사회적 효과가 기대되어 법령화를 추진 중이다. 2004년 제3627호 법령을 통해 대학 정원 할당제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적극적 우대 조치를 통한 할당제 운영은 어떤 측면에서는 주류사회에 편입되어 가는 과정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여전히 종속적 혹은 의존적 구조를 이루고 있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할당제보다 좀 더 적극적인 방법은 소수인종 집단만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을 설립하여 소수인종에게만 입학이 허용되는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다. 이는 소수 민족이 자신들의 문화를 계승하고 발전시키면서 하나의 문화 집단으로 성장하여 다른 문화 집단들과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브라질에서는 흑인과 혼혈인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이 상파울루에서 개원했다. 줘비 두스 팔마리스 대학(Faculdade Zumbi dos Palmares)은 정원의 50%까지 흑인과 혼혈인을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비정부기구인 “사회 문화 발전을 위한 아프리카계 브라질인 협회(Sociedade Afro-Brasileira de Desenvolvimento Sócio Cultural)”가 1999년 흑인들에 대한 편견과 사회적 장벽을 제거하고 흑인의 열악한 교육환경 개선과 고등교육 접근을 개선할 목적으로 설립했다. 입학조건은 모든 브라질인들에게 개방되어 있지만 흑인과 혼혈인들이 유리하다. 그리고 선발방식도 일반적인 대학 신입생 선발과 달리 면접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교육내용은 브라질 사회에 통합할 수 있는 언어, 문화, 법학과 사회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이 브라질은 다문화주의 정책을 수용하여 흑인들의 문화권을 보호해주고 있다. 특히, 문화가 법이나 제도를 통해 형성되기 보다는 일상생활에서 형성되고 학습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교육부분의

7) 2003년 브라질 역사상 처음으로 Universidade Estadual do Mato Grosso do Sul, Universidade de Brasília, Universidade Estadual do Rio de Janeiro, Universidade Estadual do Norte Fluminense, Universidade Estadual da Bahia 에서 약 7천명이 할당제를 통해 대학에 진학했다. 최근 흑인 할당제를 적용하고 있는 대학교가 점점 증가하여 14개 대학에 이른다. 직접적인 할당제 외에 가산점을 제공하는 학교도 늘어나고 있다. *Estadão*, 2004, 01.28 <http://www.estadao.com.br/educando/noticias/2004/jan/28/50.htm>

다문화 교육은 개인적 권리와 문화집단의 권리를 발전시키는데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브라질 정부는 이러한 필요성에 부응하여 교육 내용과 제도를 개편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첫째, 교육 환경의 문제이다. 흑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은 대부분이 열악한 경제 환경을 지니고 있어 학교 교육에 접근하는데 어려움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교사의 질적인 수준도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둘째, 여전히 바뀌지 않은 교육 내용이다. 일부 내용에 있어서 여전히 동화주의적 내용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셋째, 흑인과 혼혈인이 전체인구의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수만이 고등교육기관에 접근할 뿐 나머지는 여전히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할당제를 전국 대학으로 확대시키고, 흑인들을 위한 교육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흑인들의 교육과 내용을 확대 재생산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을 확대하는 것도 그 동안 억압받아 왔던 흑인들의 인권을 확연하게 신장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V. 맺음말

브라질의 다문화주의는 ‘인정’의 측면에서는 많은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재분배’의 영역에 있어서는 여전히 답보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다문화주의가 신헌법을 통해 인정됨으로써 흑인 인권이 신장되었다. 신헌법은 브라질인으로 흑인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차별적인 상황을 근절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이러한 헌법에서 인정하는 권리는 브라질의 흑인들이 사회의 일원으로서 자신들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법적인 환경을 마련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라질인들이 지니고 있는 인식에서 흑인은 여전히 기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브라질 사회가 지니고 있는 인식적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들이 이루어져야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

주의는 문화적 현상을 분석하는 도구일 뿐만 아니라 다문화적인 특성을 지닌 사회가 평등한 사회 구현을 위해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정책적인 측면을 동시에 상징하고 있다. 따라서 브라질이 조화로운 다인종적·다문화적 특성의 사회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간다운 삶이 보장되는 다문화적 민주주의가 실현되어야 한다.

브라질은 다문화주의 정책에 기초하여 인종주의 철폐를 위한 다양한 법·제도들을 마련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인종주의 철폐법은 흑인을 인정하는 내용에서 출발하고 있다. 따라서 1차적인 단계에서는 인종차별 행위를 규정하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브라질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인종문제에 대한 인식이 늦게 나타났기 때문에 인종차별에 대한 처벌단계가 차별철폐와 적극적인 우대 조치라는 수용과 보상 정책이 함께 진행되는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수용 정책은 흑인의 역사 발전 과정에 미친 영향을 재평가하는 것으로 발전했고, 보상정책은 대학 진학과 취업에 있어 흑인에게 우선권이나 가산점을 제공하는 할당제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차별철폐 정책은 다문화주의가 표방하고 있는 다원성을 보장해 줌으로서 조화로운 다문화 사회를 이루는 기본적인 틀이 된다. 그렇지만 수용과 보상 정책이 과거에 흑인이 경험한 인권 침해를 완전히 보상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현 단계 흑인들의 인권을 질적으로 보장해주지는 못하고 있다. 브라질에서 흑인의 인권이 질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교육 내용을 다문화주의적 관점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교육은 어떤 사회의 사상적인 토대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그 사회의 인식적 변화를 담을 수 있고, 사회 사상을 일반화시키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 고정관념도 변화되고 사회 변화도 발생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다문화주의 수용으로 흑인과 흑인문화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면서 학교 교과과정에 흑인의 문화와 역사가 포함되거나 특별편성을 통해 교육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내용의 변화는 브라질 사회가 지니고 있는 인식을 변화시키고 흑인들의 자의식을 일깨우게 된다. 또한 흑인들이 고등 교육 접근의 기회가 확대되고 있는데, 이것은

흑인들이 온전히 브라질 사회의 일원으로서 뿐만 아니라 사회내의 새로운 계층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우리는 브라질 흑인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인간다운 삶인 인권을 온전히 누리고 있는가와 인권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가에 주의해야 한다. 인권은 현재까지 시민·정치적 권리와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로 논의되어 왔다. 이런 측면에서 브라질 흑인의 인권을 평가한다면 인권 신장이 급격하게 이루어졌으며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인권을 민주주의의 제도화 수준으로 파악할 때 가능한 평가이다. 과연 브라질에서 흑인의 인권이 법과 제도로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며 어떤 측면에서는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인권의 개념을 2세대적인 개념을 넘어 문화권이라는 측면으로 확대한다면 흑인의 인권은 사회구조, 편견과 고정관념 같은 환경에 의해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 인권의 개념을 확대할 경우, 흑인의 인권은 법·제도적인 측면에서 초보적인 단계에 있으며, 질적인 수준에서는 여전히 부족하다. 물론 브라질이 일반적으로 수용되는 시민, 정치적 권리와 사회, 경제, 문화적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고 있어 인권 개념의 확대와 적용이 가능한가? 라는 또 다른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하지만 인권 개념이 꼭 순차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새로운 개념의 수용도 가능하다. 따라서 향후에 확대되는 인권 개념이 어떤 내용을 담고 있던 인권을 신장시키고 적용하는 과정은 많은 논의를 거쳐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Abstract

Brazil is a nation of multiple ethnic and cultural roots, but it is not a multiethnic and multi-cultural nation. After democratization, Brazil is

forming a nation of “multicultural” and “multiethnic” by the New Constitution. Multiculturalism is a policy that emphasizes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different cultures, a conception that explains the cultural situations in a society.

Generally, multicultural policies are realized by constitutional guarantee, Anti-Discrimination Act and approach to education. To realize multicultural, society needs to secure human rights of social members, especially groups repressed by others such as Black and Indio. The New Constitution of Brazil prohibits racial discrimination to black brazilian on multicultural principles. Anti-Discrimination Act recognized Black as a social member of brazil and punished racial discrimination as felony. Recently, brazilian government took effect to affirmative action, programs to overcome the effects of past societal discrimination by allocating jobs and resources to members of specific groups, such as minorities and women. Approach to education is important that Black improves personal life, modifies a stereotype and a prejudice of black brazilian.

Although legal and institutional situations were prepared, black brazilian was not ensured human rights in practice. Brazil must realize democracy to a society of “multicultural” and “multiethnic” that ensure human rights for guarantee human life of minorities.

Key Words: Multiculturalism, Brazil, Black, Human Rights, Racial Democracy /
다문화주의, 브라질, 흑인, 인권, 인종적 민주주의

논문투고일자: 2005. 11. 03

심사완료일자: 2005. 11. 21

게재확정일자: 2005. 11. 22

참고문헌

- 강권찬(2003), 「다문화주의의 현장 ; 이상적 공존제도화의 실현」, 민족연구, pp. 39-48.
- 강철구(2001), 『서양문명과 인종주의』, 지식산업사.
- 구건서(2003), 「다문화주의의 이론적 체계」, 현상과 인식, pp. 29-53.
- 김옥동(1998), 「다문화주의의 도전과 응전」, 미국학 논집, pp. 29-49.
- 마르코 마르티니엘로(2002), 『현대사회와 다문화주의』, (윤진 역), 한울.
- 박홍규(1996), 「인종차별철폐협약」, [국제인권법] 1호, pp. 85-106.
- 우석균(2002), 「라틴아메리카의 문화 이론들: 통문화, 혼종문화, 이중 혼형성」, 라틴아메리카연구, Vol. 15, No.2. pp. 283-294.
- 이근관(1998), 「미주인권제도에 관한 고찰」, 국제인권법, 2권. pp. 308-335.
- 이용승(2004), 「호주의 다문화주의」, 동아시아연구, Vol. 18, pp. 177-205.
- 정상준(2001), 「다문화주의를 넘어서」, [http://yac.yuac.kr/data/2001.11.6.hwp\(2005.0630\)](http://yac.yuac.kr/data/2001.11.6.hwp(2005.0630)).
- “Afirmativa Plural” Año 1, No. 5, Afrobras, p. 64.
- Barbosa, De Assunção et al.(2003), *De Preto a Afro-Descendente*, São Carlos: Edufscar.
- Barbosa, Wilson do Nascimento(2002), *Cultura Negra e Dominação*, Rio Grande do Sul: Editora Unisinos.
- Bernardino, Joaze(2002), “Ação Afirmativa e a Rediscussão do Mito da Democracia Racial no Brasil”, *Estudos Afro-Asiático*, No. 2. pp. 247-273.
- Brasilmar Ferreira Nunes, Deis Siqueira(1999), *Relações Raciais e Grupos Socialmente Segregados*, Brasília: Movimento Nacional de Direitos humanos.
-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2003), “Reports Submittes by States Parties: Seventeenth periodic reports of States Parties due in 2002”, UN.

- Davis, Darien J., *Afro-brasileiros Hoje*, São Paulo: Selo Negro.
_____ (1999), *Afro-Brazilians : Time for Recognition*, New York: MRG.
- Dovidio, John(1988), *Prejudice, discrimination, and racism*, Orlando: Academic Press.
- Grretón, Manuel Antonio(1996), “Human Rights in Democratization Processes”, in Elizabeth Jelin & Eric Hershberg(eds.), *Constructing Democracy: Human Rights, Citizenship, and Society in Latin America*, Westview Press, pp. 39-56.
- Guimarães, Antonio Sérgio Alfredo(1997), *Racismo e Anti-racismo no Brasil*, USP.
_____ (2002), *Classes, Raças e Democracia*, São Paulo: Editora 34.
_____ (2004), *Preconceito e Discriminação*, São Paulo: Editora 34.
- Hanchard, Michael George(1994), *Orpheus and Power : The Movimento Negro of Rio de Janeiro and São Paulo, Brazil, 1945-1988*,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 Martínez-Echazábal, Lourdes(1998), “Mestizaje and the Discourse of National/Cultural Identity in Latin America, 1845-1959”, *Latin American Perspectives*, Vol. 25, No. 3. pp. 21-42.
- Ministério da Justiça, Secretaria de Estado dos Direitos Humanos(2002), *Segundo Relatório Nacional Sobre os Direitos Humanos no Brasil*, Brasília.
- Paim, Paulo(2003), *Estatuto da Igualdade Racial*, Brasília: Senado Federal.
- Porto, Maria do Rosário S., Canti Afrânio M. & Prudente, Celso(2002), *Negro: Educação e Multiculturalismo*, São Paulo: Panorma.
- Programa Nacional de Direitos Humanos(2000), *Discriminação: uma questão de Direitos Humanos*, Brasília: Ministério do

Trabalhoe Emprego.

- Sell, Sandro Cesar(2002), “Ação Afrimativa e Democracia Racial: Uma Introdução ao Debate no Brasil”, Florianópolis, Boiteux.
- Semprini, Andrea(1997), *Multiculturalismo*, São Paulo: EDUSC.
- Seyferth, Giralda et al.(2002), *Racismo no Brasil*, São Paulo: Anped.
- Souza, Jessé(1997), *Multiculturalism e Racismo:uma comparação Brasil-Estados Unidos*, Brasilia: Paralelo 15.
- Telles, Edward(2003), *Racismo à Brasileira: Um Nova Perspectiva Sociológica*, Rio de Janeiro: Relume Dumará.
- Wade, Peter(1997), *Race and Ethnicity in Latin America*, Chicago: Pluto Press.

인터넷 자료

- UNITED NATIONS(2004), “COMMITTEE ON ELIMINATION OF RACIAL DISCRIMINATION CONSIDERS REPORTS OF BRAZIL”,
[http://www.unhchr.ch/hurricane/hurricane.nsf/view01/09BCBF3661E AACBDC1256E52002F04EC?opendocument\(2005.05.31\)](http://www.unhchr.ch/hurricane/hurricane.nsf/view01/09BCBF3661E AACBDC1256E52002F04EC?opendocument(2005.05.31))
- Estadão, 2004, 01.28
<http://www.estadao.com.br/educando/noticias/2004/jan/28/50.htm>